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8.

발의자 : 어기구 · 김태선 · 박균택

임호선 · 박희승 · 조승래

박수현 · 박용갑 · 진성준

조인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,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'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.2%인 반면, 어촌의 고령화율은 48%에 달하며, 어가인구는 '18년 231만명에서 '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,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주요내용

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· 양식업권,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9조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면제한다.</p> <p>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각각 면제한다.</p>	<p>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2030년 12월 31일</u>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2030년 12월 31일</u>-----.</p>